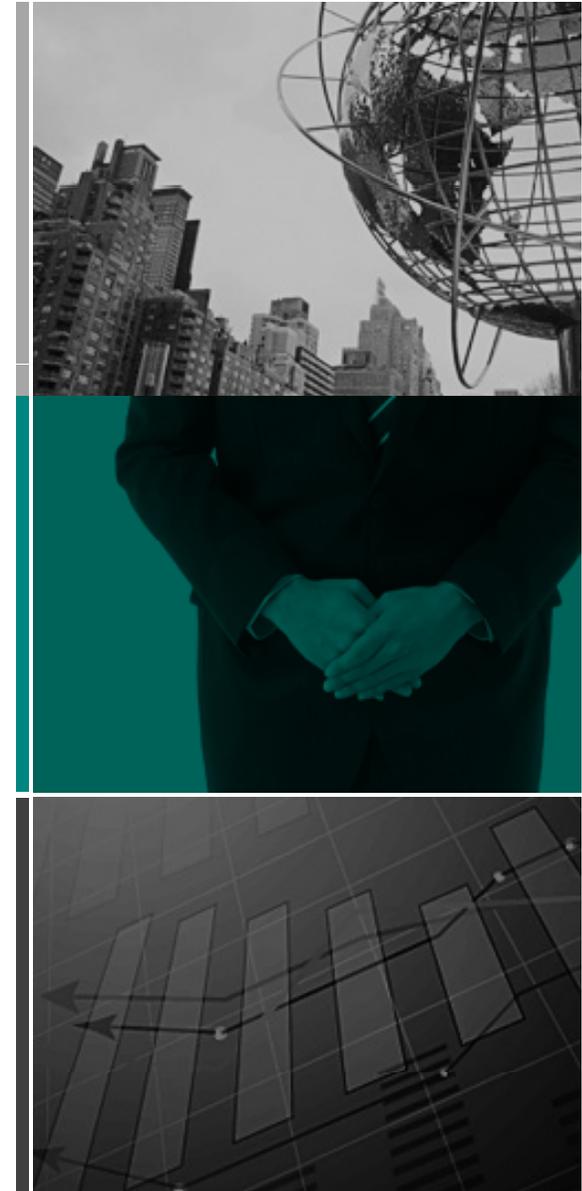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류창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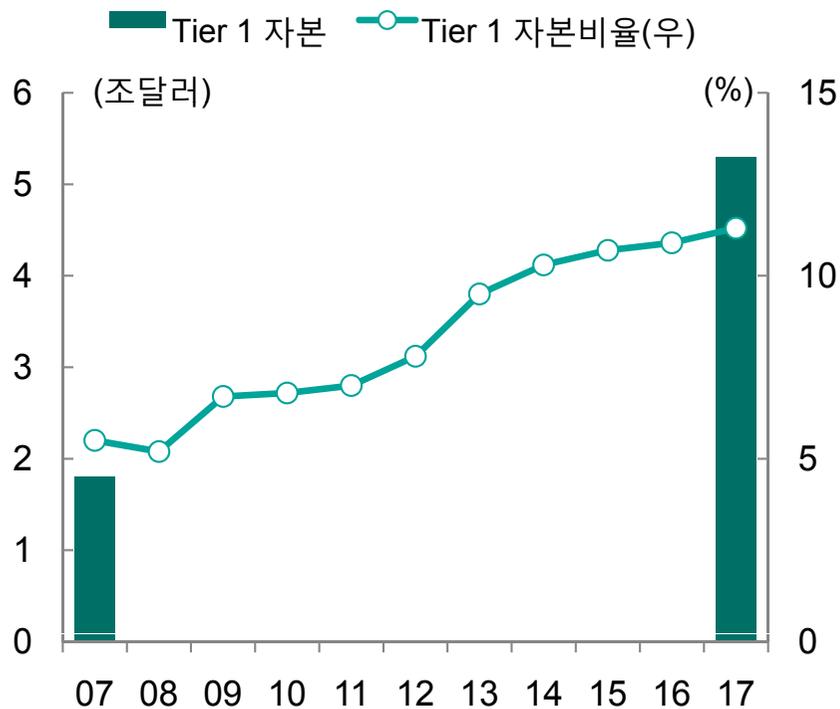
Contents

1. 4차 산업혁명 시대 은행의 대응, 디지털 전환
2. 주요국의 은행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동향
3.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슈 및 과제

글로벌 은행업의 현 주소: 규제 강화로 건전성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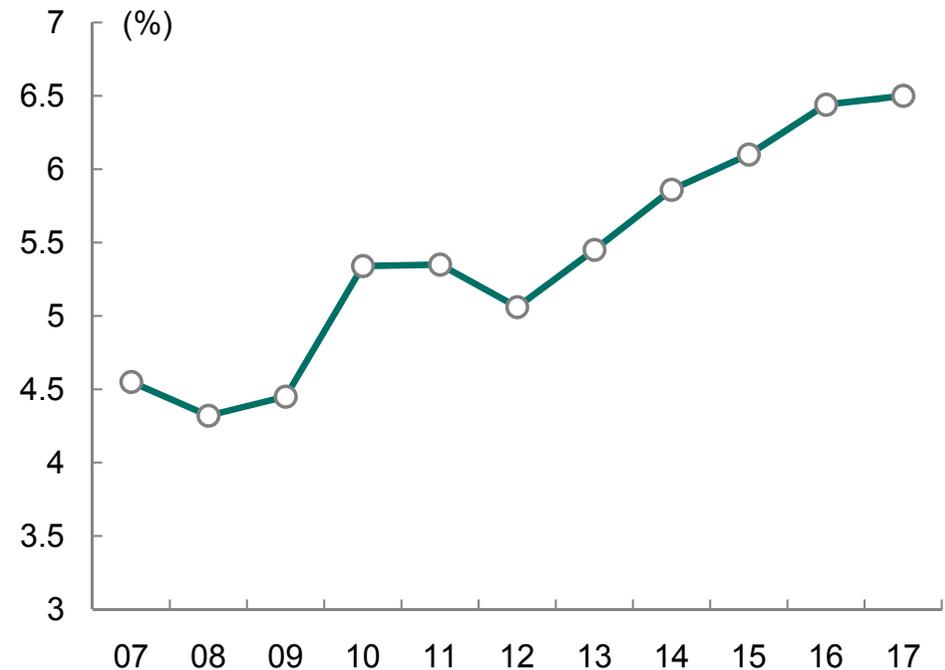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중심의 규제 강화로 글로벌은행들은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해서 자기자본이 2배 증가하고, Tier 1 자본비율도 큰 폭 개선(2017년 12.6%)

글로벌은행의 Tier 1 규모 및 비율 추이



주: 글로벌 200대 은행 기준
 자료: SNL Financial Database, EY

자산 대비 Tier 1 자본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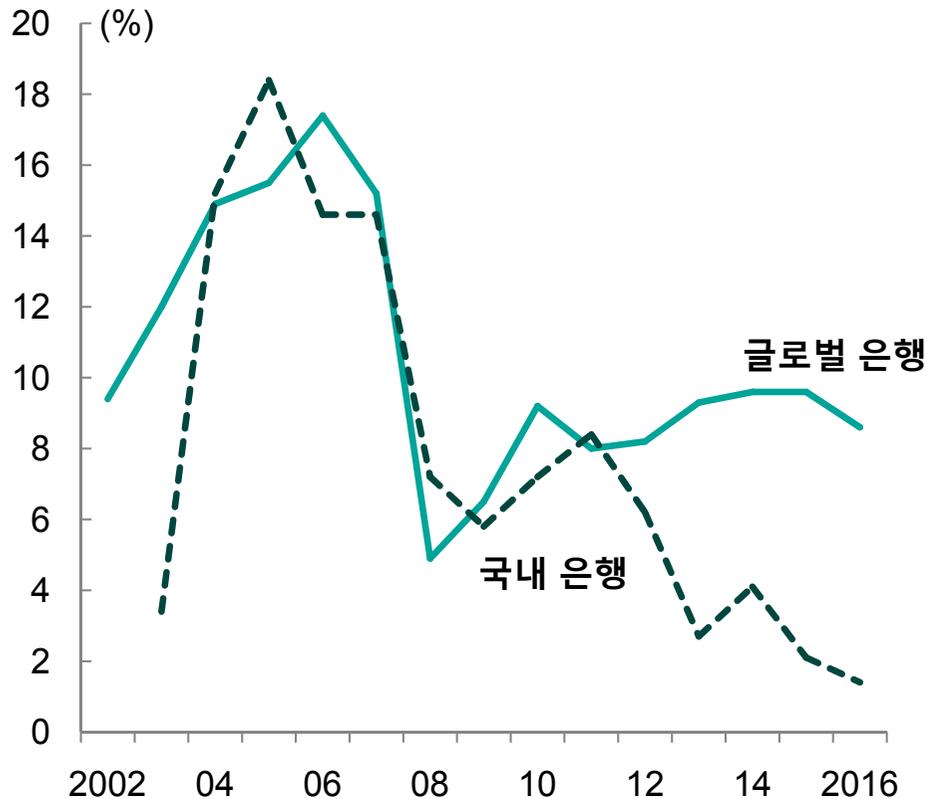


주: Tier 1 자본 기준 1000대 은행 기준
 자료: The B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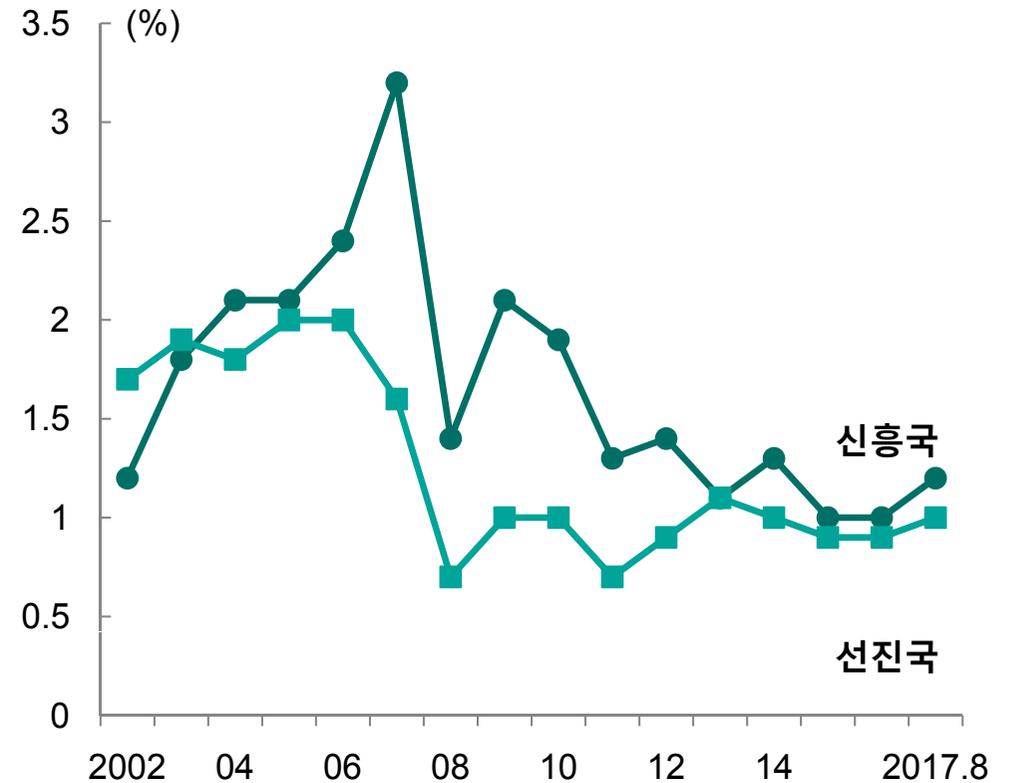
글로벌 은행업의 현 주소: 수익성 정체 및 성장 기대감 상실

- 금융위기 이후 완만하게 진행되던 글로벌은행들의 수익성 개선 흐름이 정체 단계로 진입
 - 위기 이후 지속적인 비용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평균 판관비 및 자산대비 판관비 비율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저금리,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의 진입 등으로 마진 축소,
- PBR은 선진국(1.0)과 신흥국(1.2) 모두 역사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글로벌 은행의 ROE



글로벌 은행의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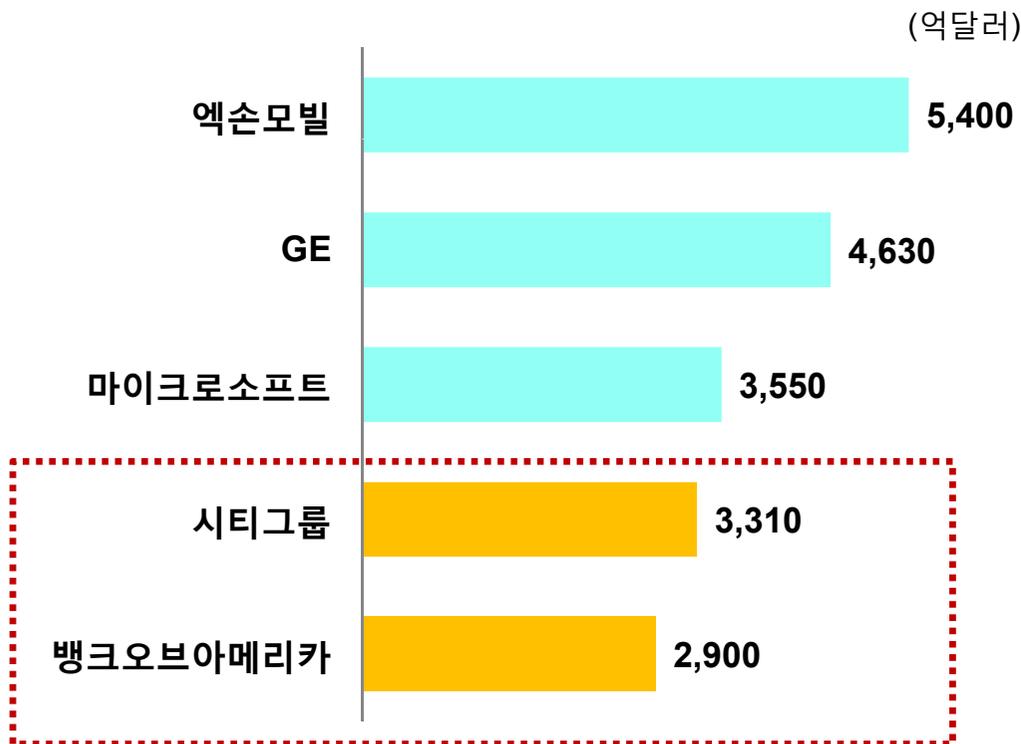


자료: McKinsey&Compan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 2017, SNL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업의 위상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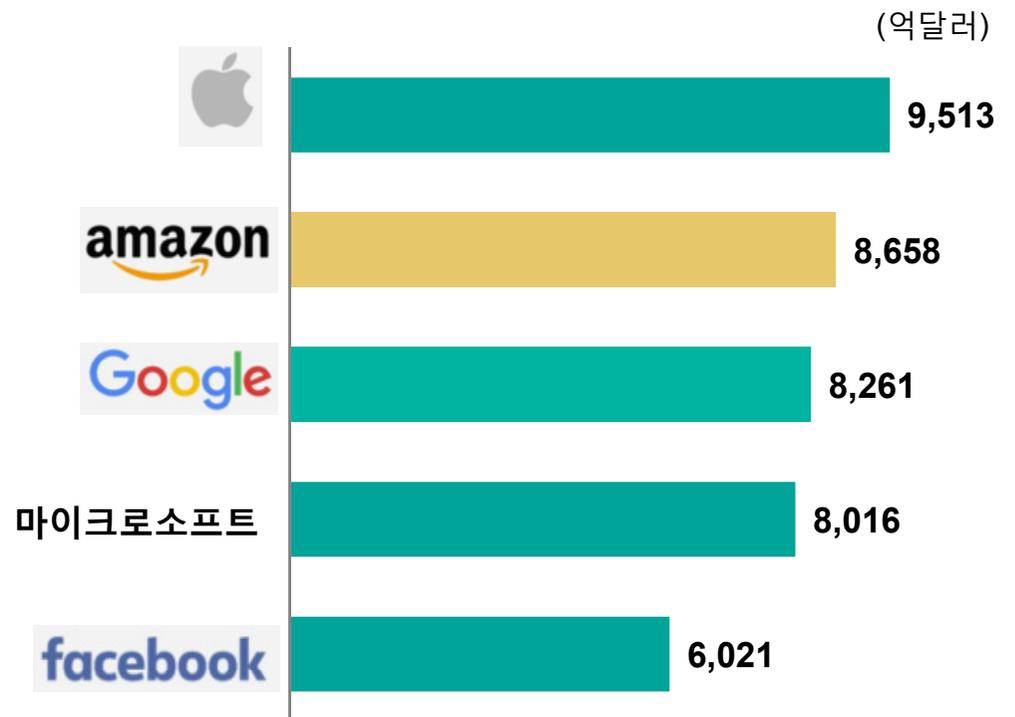
- 지난 10년간 FAANG(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은 자본이 적게 소요되는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에 의한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기존 기업들의 기업가치를 압도
- 10년전 시가총액 최상위였던 Citi, BoA 등 금융회사의 위상은 크게 하락

2006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



자료: 스콧 갤러웨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 (2017)

2018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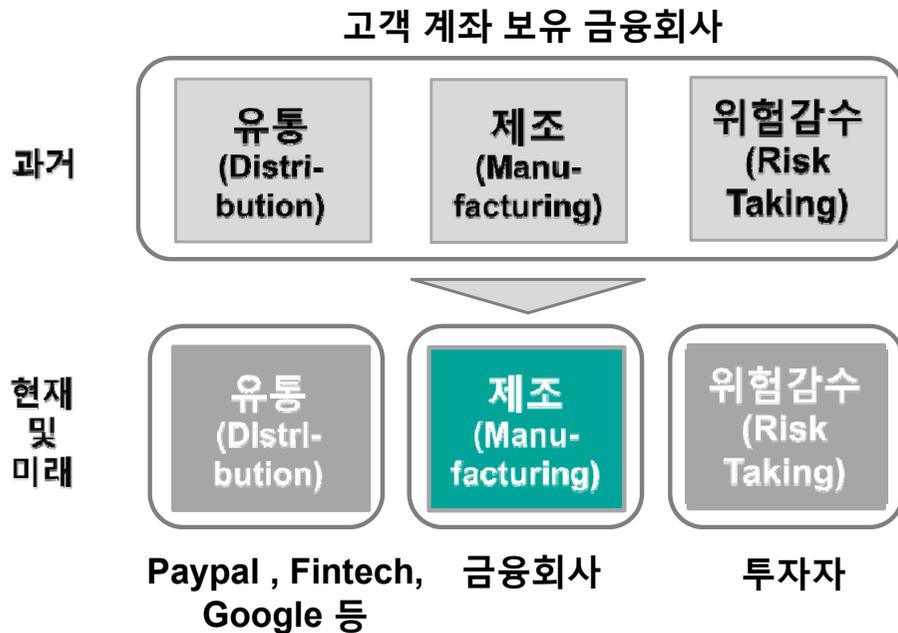
주: 2018년 7월 13일 기준

디지털 기업의 진입은 기존 금융업에 중대한 도전

-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입으로 ① **금융회사와 고객 간 관계가 약화**되고 ② **수익마진이 감소**
- 디지털 기업의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1 은행과 고객간 관계 약화

수요 증가 및 디지털 기업에 대한 신뢰 확대 등으로 고객이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이탈하는 근거로 작용
 - 전통적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제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WEF)



2 마진 감소

디지털 기업은 소비자금융 등 비교적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를 공략 중

[핀테크가 은행 수익에 미치는 영향 추정 (2025)]

	이익 증감(%)	수익 증감(%)
소비자금융	-60	-40
지급결제	-35	-30
중소기업 대출	-35	-25
WM	-30	-15
모기지	-20	-10



자료 : WEF(2015)

자료 : McKinsey(2015)

글로벌 은행들은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 트렌드로 제기되는 위협을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고객 및 마켓(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IDC)

은행업 디지털 전환의 분야



은행업 디지털 전환의 기대 효과



자료: MIT Center for Digital Business, Capge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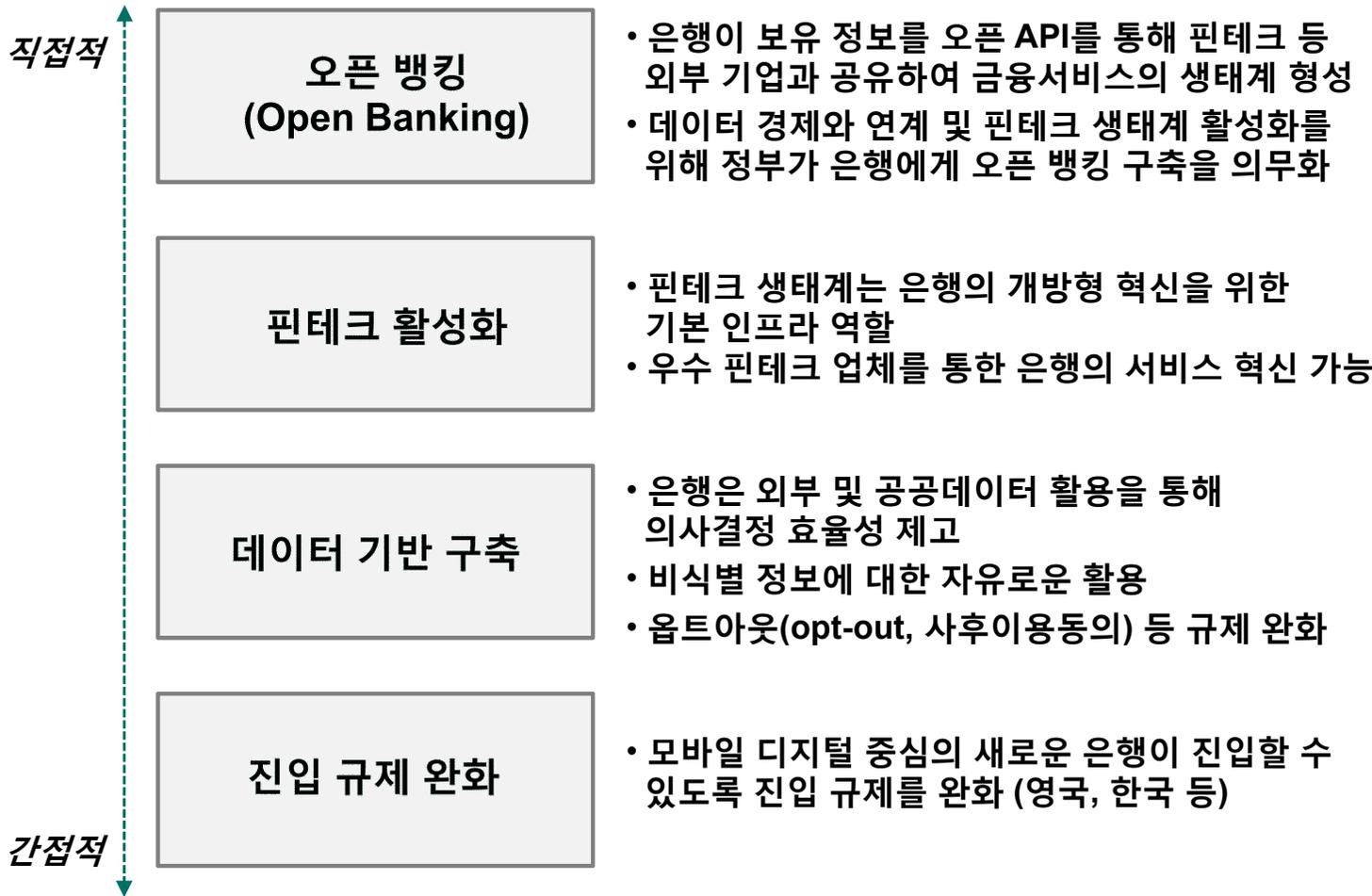
Contents

1. 4차 산업혁명 시대 은행의 대응, 디지털 전환
2. 주요국의 은행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동향
3.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슈 및 과제

각국 정책 당국은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

- 각국 정책 당국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오픈 बैं킹,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와 같은 직접적 정책과 데이터 기반 구축, 진입 규제 완화 등 간접적 촉진 정책을 병행

주요 정책 내용



전통적 은행



디지털 은행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영국: ① 진입 규제 완화 → 디지털 기반 챌린저 은행 출현

-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자국 은행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
- 디지털 전문은행 등 신규 은행들이 기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진입규제 완화(Challenger Bank 도입)

개념	Challenger Bank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신규 인허가를 받은 은행(약 50여개)을 통칭 (M/S 10% 미만)
도입배경	금융위기시 은행간 합병으로 경쟁 ↓ →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행 라이선스를 추가 허가

(단위:백만파운드)

은행명	설립(인수) 시기	총자산(2017)	대출금(2017)
CYBG	2016년	43,231	31,774
Virgin Money	2009년	41,108	36,740
Metro Bank	2010년	16,355	9,620
OneSavings	2011년	8,589	7,306
Shawbrook	2011년	5,759	4,844

자료 : SNL

Challenger Bank 유형

구분	주요 은행	특징
중형 Full service	CYBG, Co-op, TSB	대부분의 은행서비스 (Full service) 제공
특화 은행	Aldermore Bank, OneSavings, Secure Trust, Shawbrook	SME 대출 및 모기지 특화
브랜드 활용 은행	Tesco, Sainsbury's, Virgin Money	기존 그룹 고객 특화
디지털 전문은행	Monzo, Starling, Tandem	디지털 친화 고객에 특화

자료 : PwC (2017)

영국: ② 오픈 데이터 정책 → 은행의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오픈 데이터 및 빅데이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은행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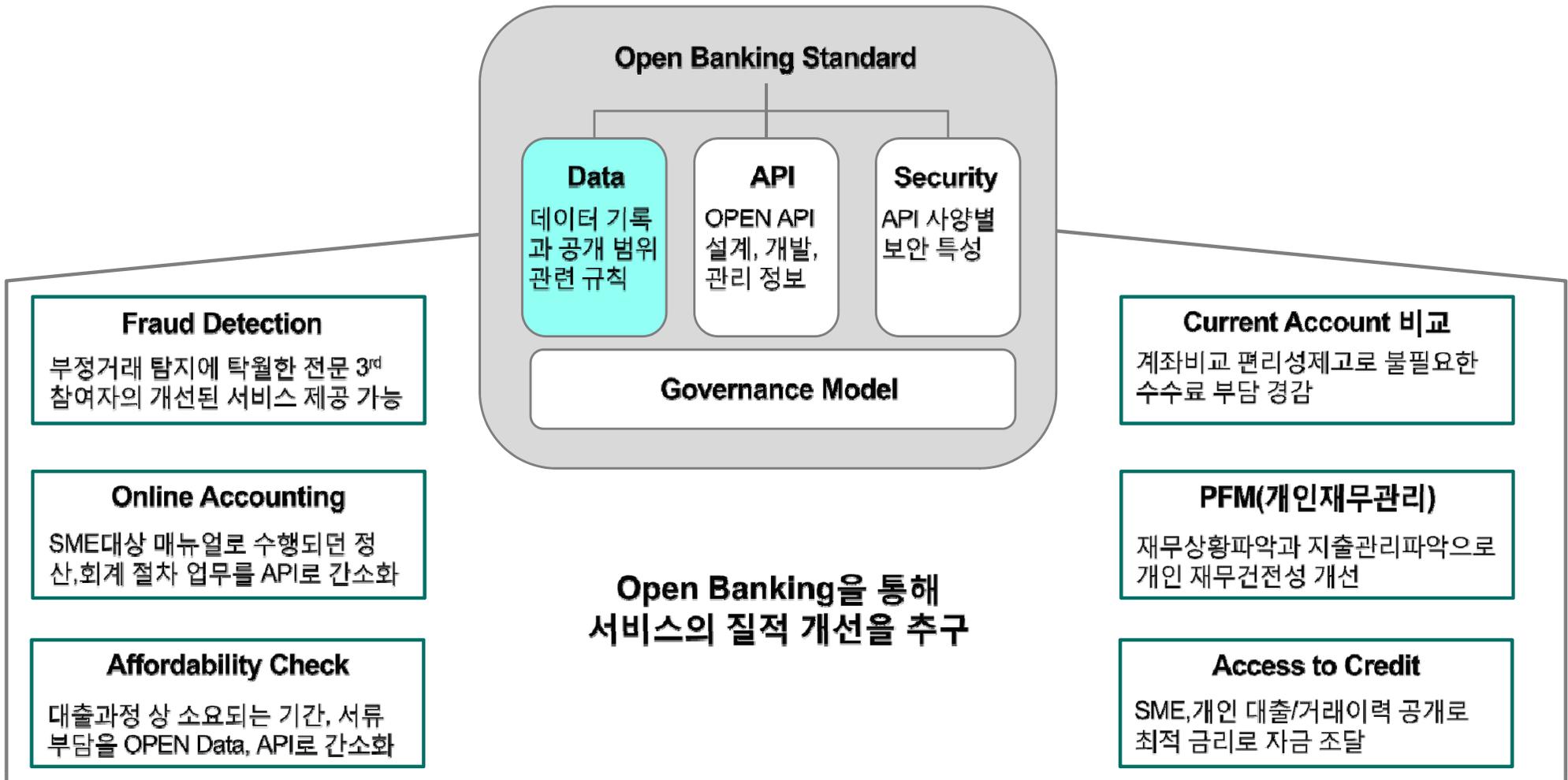
- 
- 2000 • 2000년 11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제정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
- 2005년 1월 발효된 이 법에 따라 영국 모든 정부기관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범위 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이관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
 - 2005 • 2005년 6월, EU의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바탕으로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을 제정
 - 2010 • 인터넷 포털사이트(data.gov.uk)를 구축해 공공데이터를 본격 제공
 - 2011 • 2011.4월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데이터를 해당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이데이터(midata)**' 정책 추진 ('Better Choices, Better Deals')
 - 2012 • 2012.3월 기업혁신기술부(BIS)는 데이터전략위원회(DSB)를 설립하고 '**오픈 데이터 백서**' 발표
 - 2013 • **빅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 (UK Data Capability Strategy: Seizing the Data Opportunity)** 발표
 - 2014 • 2014.7월 '**Open Data Strategy**'를 발표하고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원칙 제시

자료 : 한국데이터진흥원, '2017 데이터 산업 백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리

영국: ③ 오픈 뱅킹 정책 → 은행업 혁신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 일련의 은행업 개혁을 추진했던 영국 정책 당국은 개방을 통한 은행업 혁신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후생 제고를 위해 오픈 뱅킹을 추진

Open Banking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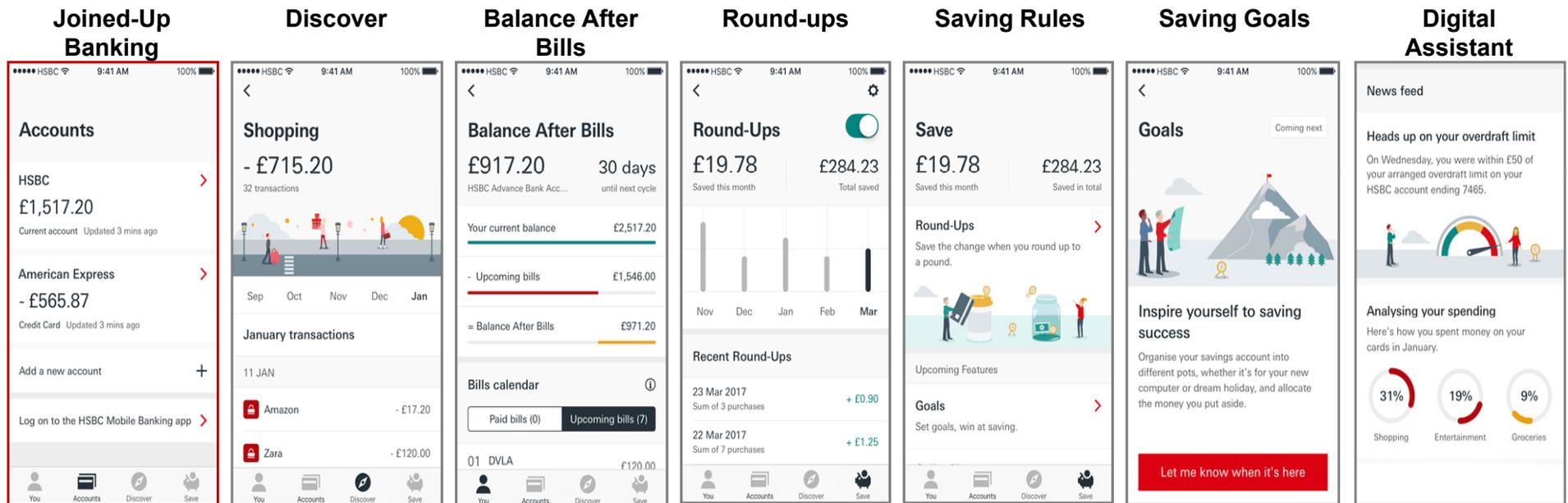


자료 : Open Banking Institute, 'Open Banking Standard' (2016)

[사례] HSBC의 계좌 종합정보 플랫폼

- HSBC는 영국 내 HSBC 당좌 계좌를 보유한 온라인 뱅킹 고객이 오픈 뱅킹 도입으로 타 금융기관 보유 계좌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Connected Money 앱을 출시

HSBC, Connected Money 사례



• 영국 내 **계좌, 신용카드, 모기지, 대출을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소비 분석 (지출 내역 관리, 알람 기능 포함)

• 고지서 관리(현재 계좌 잔액과 월별 고지서 등을 대사해 예상 잔액 알림)

• 매일 잔돈을 저축(예, 직불카드 구매시 잔돈(폐니 금액)을 자동 저축)

• 저축 관련 Rule을 만들어 불필요한 상품 구매시 자동 적립

• 저축을 작은 목표별로 나눠 적립 유도 (진도율을 확인 가능)

• 소비, 저축 관련 알람 등을 통해 고객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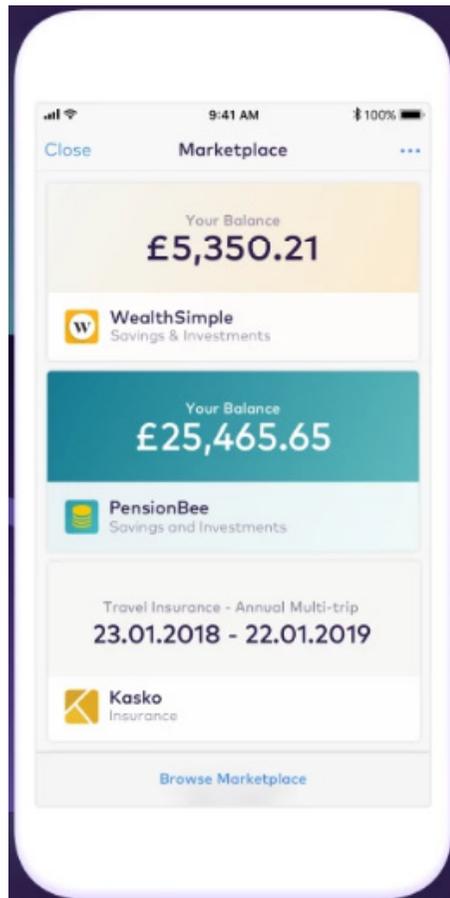
대형은행도 타 은행의 계좌 정보 공유하는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자(AISP)' 역할을 수행

자료 : HS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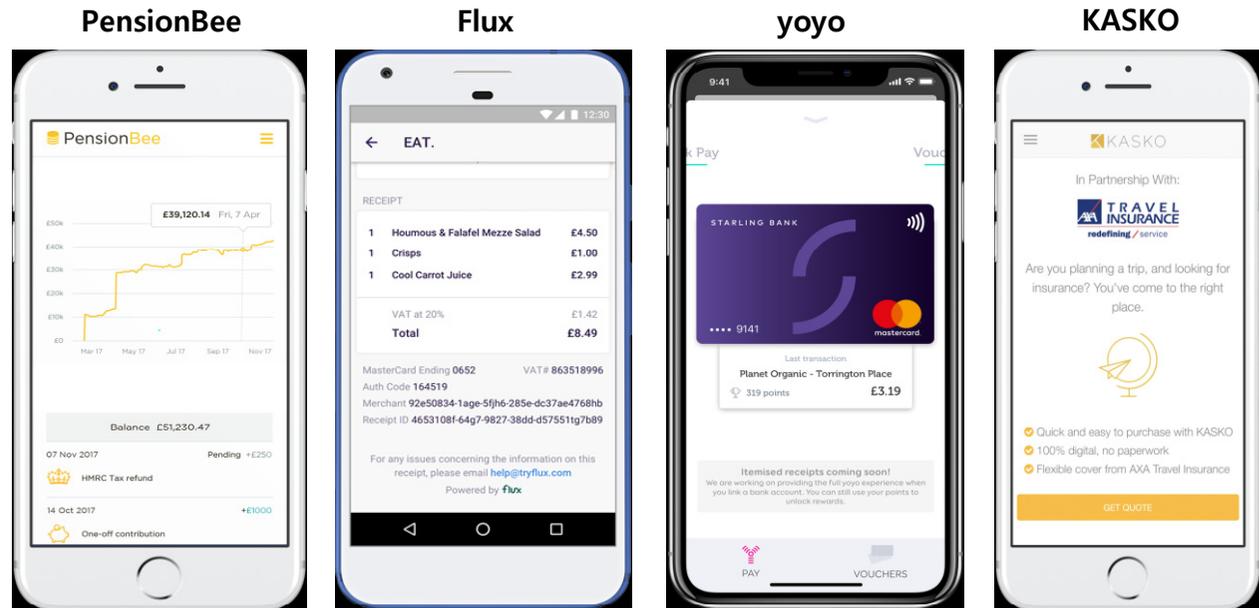
[사례] Starling Bank의 Marketplace

- Starling은 Marketplace에 연금, 영수증, 지급결제,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입점(현재 6개)시키고 있으며 Partnership을 통해 2018년 중 25개까지 이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Marketplace GUI



Starling Bank Marketplace 입점 주요 앱



- 연금 잔액 정보 등을 제공
- Starling Marketplace 최초 입점
- 실물 영수증 및 포인트 카드를 대신해 고객 편의 제고
- 물품 구매시 은행 계좌를 통한 지급과 포인트 적립의 편의 제고
- AXA여행자보험과 파트너십 형태로 보험 판매(일회성 또는 매년 주기적 형태의 여행자 보험 구매 가능)

“제3자 핀테크 업체들은 Starling의 Marketplace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하며, 가입 절차가 단순화”

영국: ④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 환경 정비

- 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변화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우수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
- 최근 수년간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효과적 규제개혁과 민관협력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수준의 성장

감독기구 이원화

- 2013년 4월 금융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기구(PRA)와 금융행위 감독기구(FCA)로 이원화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FCA는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
- 2014.5월 Project Innovate 이니셔티브 발표

Innovation Hub 운영

- Project Innovate의 주요 혁신정책으로 2014년 10월부터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Innovation hub를 운영 중
-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는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서비스 기업의 신규 사업 단위에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규제 요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

Regulatory Sandbox 최초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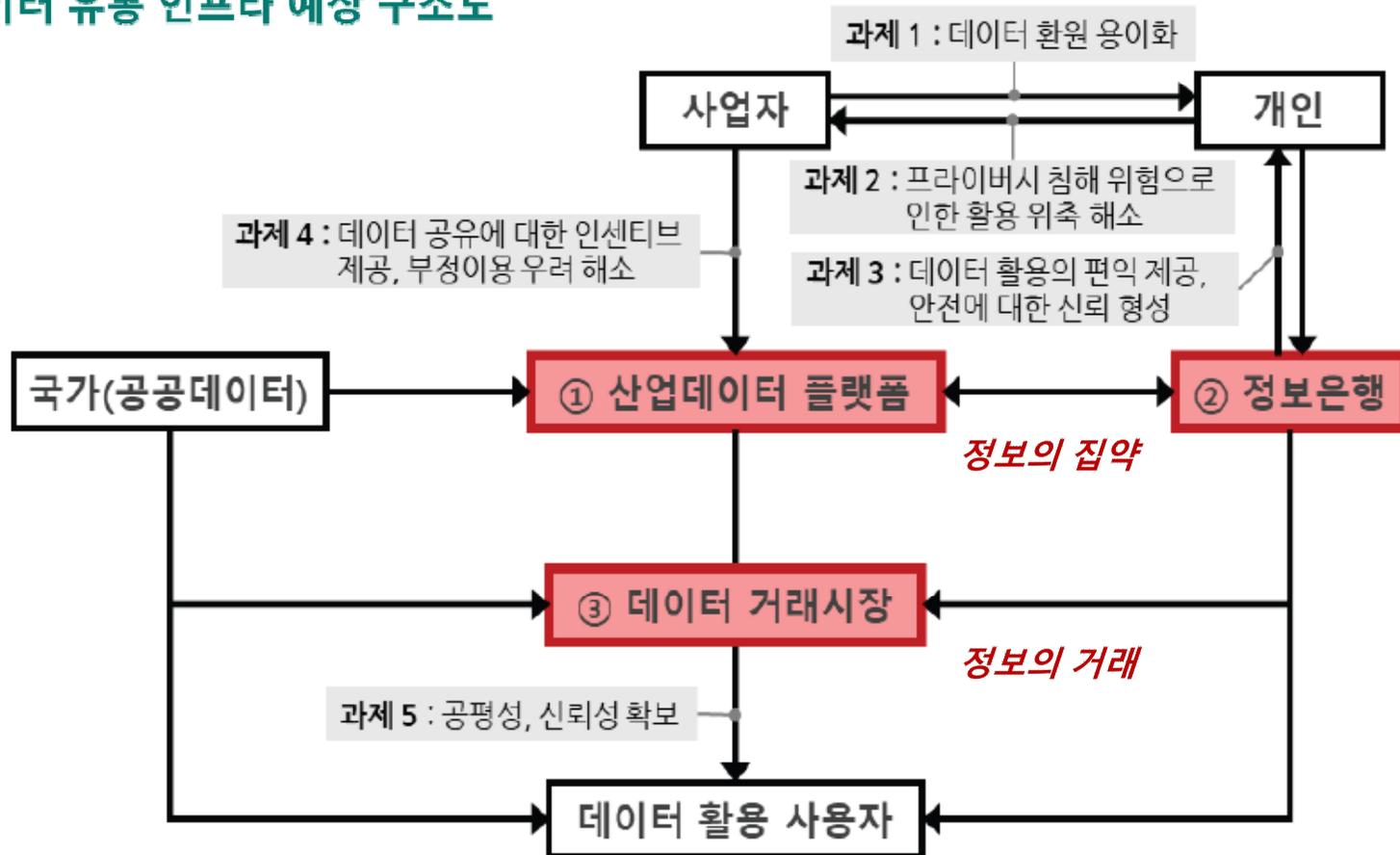
- FCA는 2016년 5월부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규제에 제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시행
- 혁신적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실제 환경에서 해당되는 모든 규제요건에 적용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자료: KIEP,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2016)

일본: 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 시장의 기반을 마련
- 정보거래 중개기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타당성을 평가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을 선보이며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추진

일본 데이터 유통 인프라 예상 구조도



자료: 일본 관계부처 합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주권 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2018)

일본: ② 은행법 개정 → 전자결제등대행업자 정의 및 오픈API 법제화

- 일본 금융당국은 IT기업 등 다양한 참가자에 의한 이노베이션 촉진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오픈 API 구축과 전자결제 등 대행업자의 접속 기반 강화를 추진
 - 전자송금서비스(PISP) 및 계좌관리서비스(AISP)를 할 수 있는 전자결제등대행업(電子決済等代行業)을 정의

전자결제 등 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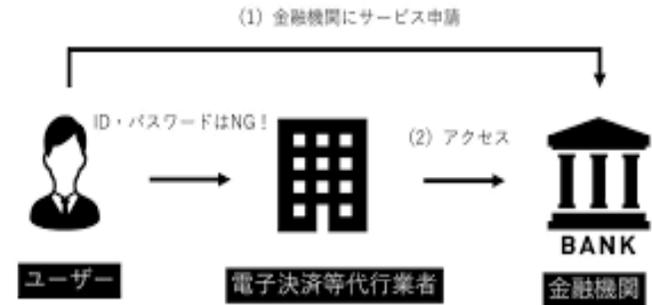
- 전자 결제 등 대행업은 내각 총리 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영위 할 수 없다 (전자 결제 등 대행업 등록 의무)

전자결제 등 대행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이용자에 대한 설명 (전자결제등 대행업자의 권한, 손해배상 관련 사항, 불편 및 상담에 응하는 영업소 연락처 등)
-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와 오인 방지 조치 및 전자결제 등 대행업에 관해 취득한 이용자 정보의 적정한 취급 및 안전 관리
- 전자결제 등 대행업자에게 장부 작성·보존 의무,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
- 당국에 의한 전자결제 등 대행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업무 개선 명령, 업무 정지 명령, 보고 청취, 입회 검사 등)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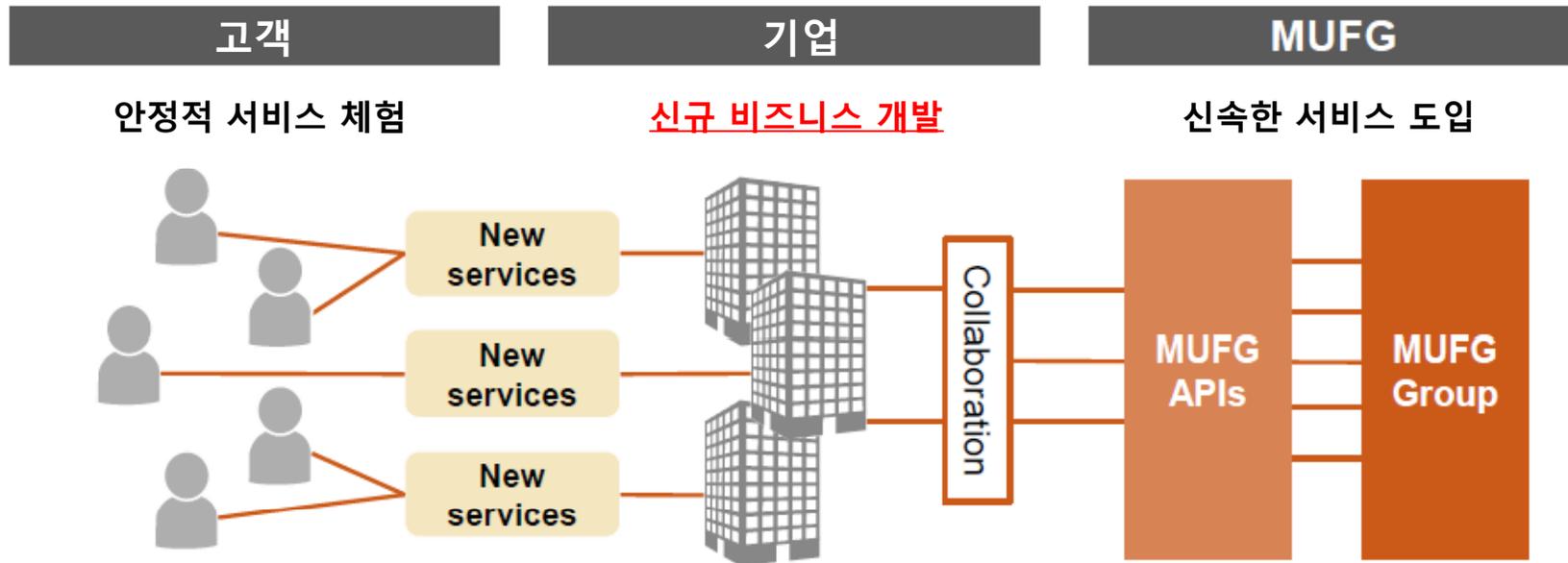
Open API 도입 노력 의무 등 은행의 개방형 혁신 추진과 관련한 조치 시행

- 은행은 전자결제 등 대행 업체와의 제휴·협동에 관한 방침을 책정·공표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접속 기준을 작성·공표 해야 함
- 은행은 대행업자가 이용자에서 식별부호 등을 취득하지 않고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에 힘써야 함 (Open API 도입 관련 노력 의무)



[사례] Open API를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 (MUFG)

- MUFG는 은행법 개정 이후 다양한 Open API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개발을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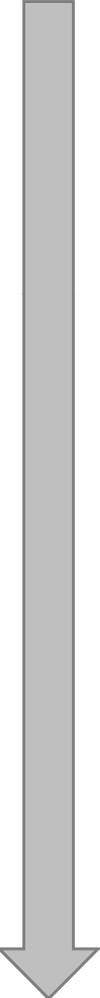


고객 서비스 콘텐츠			
Scheduled	Introduced		
Retail API Bank	BizSTATION API Bank	Kabu.com API Securities	eMAXIS Web API AM
개인고객 대상 계좌정보 조회 및 거래기능	기업고객 대상 계좌정보 조회 및 거래 기능	주식/선물/옵션 주문 주문내용 확인 계좌조회 기능	eMAXIS 인덱스 펀드 고객 대상 데이터 검증 서비스

자료: MUFG

싱가포르: 핀테크 육성 정책 → 은행과 핀테크 협업 활성화

- 싱가포르는 저성장 지속, 생산성 저하 등을 극복하고 장기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의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2015년 이후 핀테크 산업을 미래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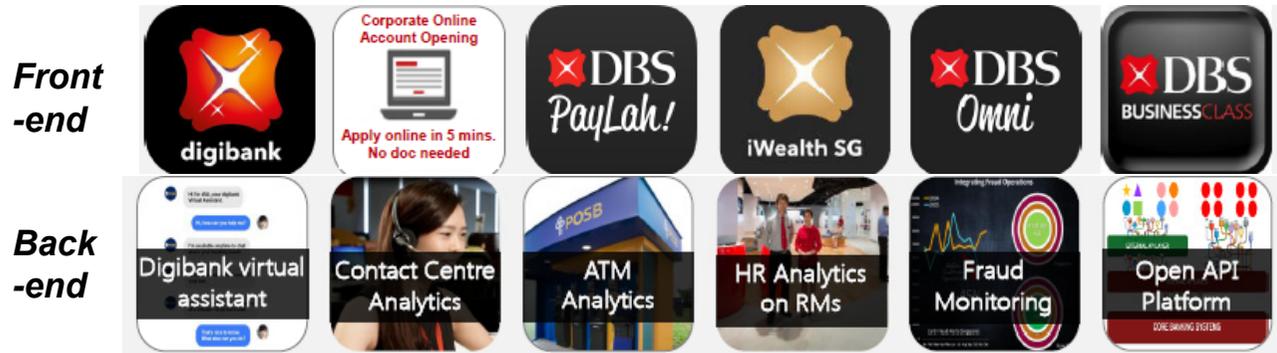
- 
- 2015**
 - 글로벌금융센터인 싱가포르에 혁신 기술을 접목시켜 “Smart Financial Center”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싱가포르 통화청(MAS)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 정비
 - 금융기술혁신그룹(FTIG: Financial Technology & Innovation Group)을 설치(2015.8)하여 금융산업에 혁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 정책을 담당토록 함
 - 2016**
 - 핀테크 오피스(2016.5)을 설립하여 핀테크 관련 원스톱 지원을 강화
 - 국제기술자문위원회 (ITAP: International Technology Advisory Panel)를 구성(2016.8)하여 핀테크 관련 국제기술발전에 대해 MAS에 설명하고 신기술을 금융기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자문토록 함
 -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를 만들어 실행
 - MAS내에 Fintech Innovation Lab을 설치 (2016.8)하여 MAS가 금융기관, 스타트업, 기술자와 공동으로 핀테크 솔루션을 실험
 - MAS는 오픈 API를 금융혁신에 꼭 필요한 토대로 인식
 - 핀테크 해외기업의 싱가포르 투자 유치, 국내외 공동 기술 개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핀테크 관련 MOU를 많은 국가들과 체결
 - 국제적 규모의 핀테크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
 - 2017**
 - 정부차원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 (Project Ubin)
 - 현재 싱가포르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인 MEPS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
 - 6개월로 단축
 - 2018**
 - Fintech Fast Track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핀테크 관련 신기술에 대한 특허 승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자료: 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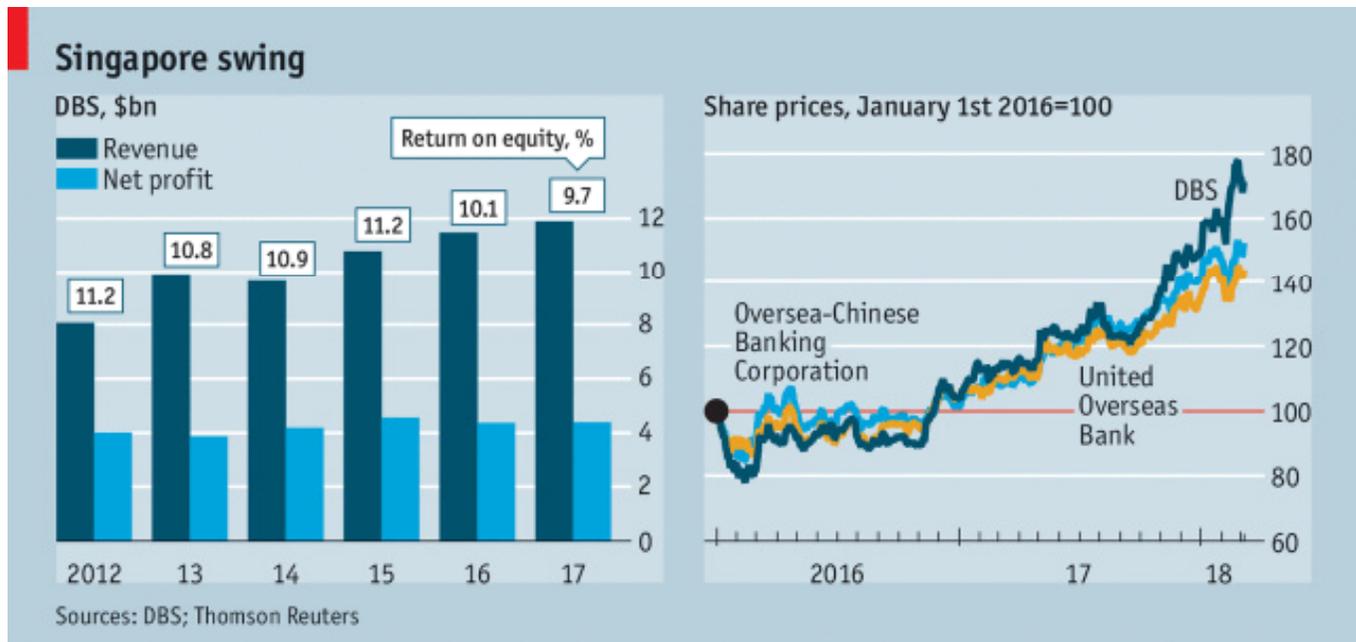
[사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 DBS

- DBS(싱가포르개발은행)는 범종화권에서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강력한 위기로 여기고, 2009년 이후 일관된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으로 발돋움

* Euromoney 선정 World Best Digital Bank를 2016년과 2018년에 수상



- 2009년 이후 CEO Piyush Gupta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 고객 중심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출시
 - 2018년 세계 최대 Open API 플랫폼 개설



- Economist지가 DBS의 디지털 전환 성공을 조명
 - 지속적인 수익 증가 및 10% 내외의 안정적 ROE 유지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대로 경쟁사 대비 높은 주가 기록

자료: DBS, The Economist, "How digitization is paying for DBS", 2018.3.8

[참고] 각국 정부는 오픈 뱅킹을 통해 은행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 은행 부문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목적으로 오픈 뱅킹 정책을 가속화

영국

- CMA9에 의거 2018년 전 은행의 오픈API 의무화
- PSD2에 따라 광범위한 협력 의무화

EU

- PSD2에 따라 2018년부터 은행은 외부사업자와 API 연계가 의무화

아시아

- 중국: 이미 결제영역을 기점으로 주요 사업자가 오픈API 구축
- 홍콩: 2018년초 오픈 뱅킹 전문가 회의 시작
- 싱가포르: 이미 많은 은행이 API연계 실시

일본

- 2017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API 구축 의무화
- 2020년까지 은행의 실행 요구

호주

- ‘소비자 정보에 관한 권리’에 관한 법률로 데이터 오픈화 규정
- 실시일정은 향후 확정이나 4대 은행도 대상에 포함 전망

캐나다

- 2020년 오픈 뱅킹 실시 검토

미국

- 은행API 규제는 없으나, 대형은행은 핀테크 및 데이터 수집가 (aggregator)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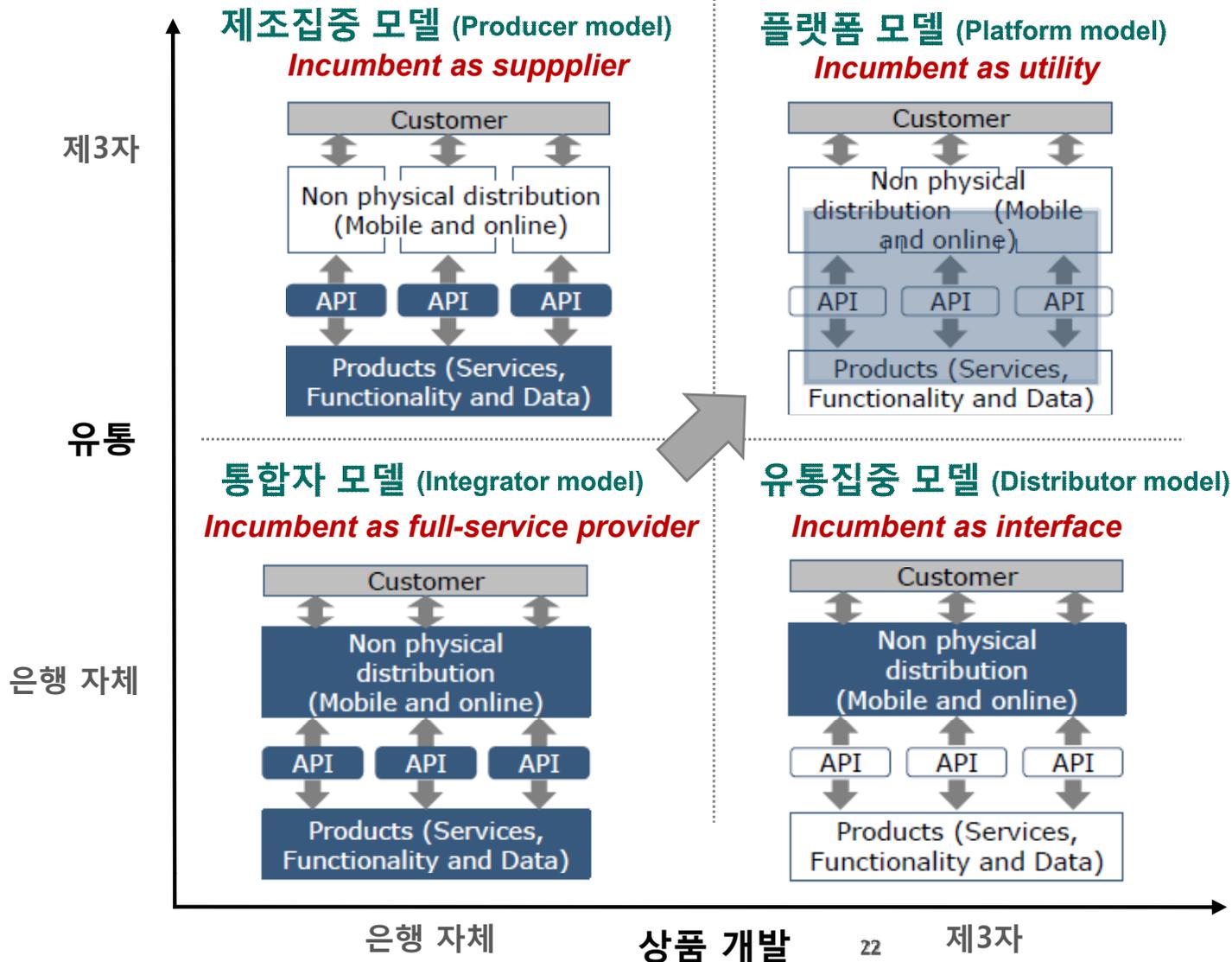
멕시코

- 영국 기준에 입각한 은행API 오픈 의무화 법제 검토

자료: PwC Japan, "Strategy&Foresight vol 16" (2018)

[참고] 오픈 뱅킹에 따른 은행업의 사업모델 분화

- 핀테크의 발전 정도, 은행의 오픈 뱅킹 수행의 적극성 등에 따라 기존의 통합자형 파이프라인 사업모델이 플랫폼 모델 (Banking-as-a-service)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전망
- 은행은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상품화(Data Monetization)로 수수료 수익이 증대



- 통합자 모델**
 - 은행이 제조와 유통을 모두 담당하며, 고객의 경험을 통제하는 **현재 은행의 모델**
- 제조 중심 모델**
 - 은행은 API를 통해 제3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만들고 제3자가 이를 유통
- 유통 집중 모델**
 - 은행이 제3자의 상품을 자체 유통망(채널)에서 판매
- 플랫폼 모델**
 - 은행이 제3자와 고객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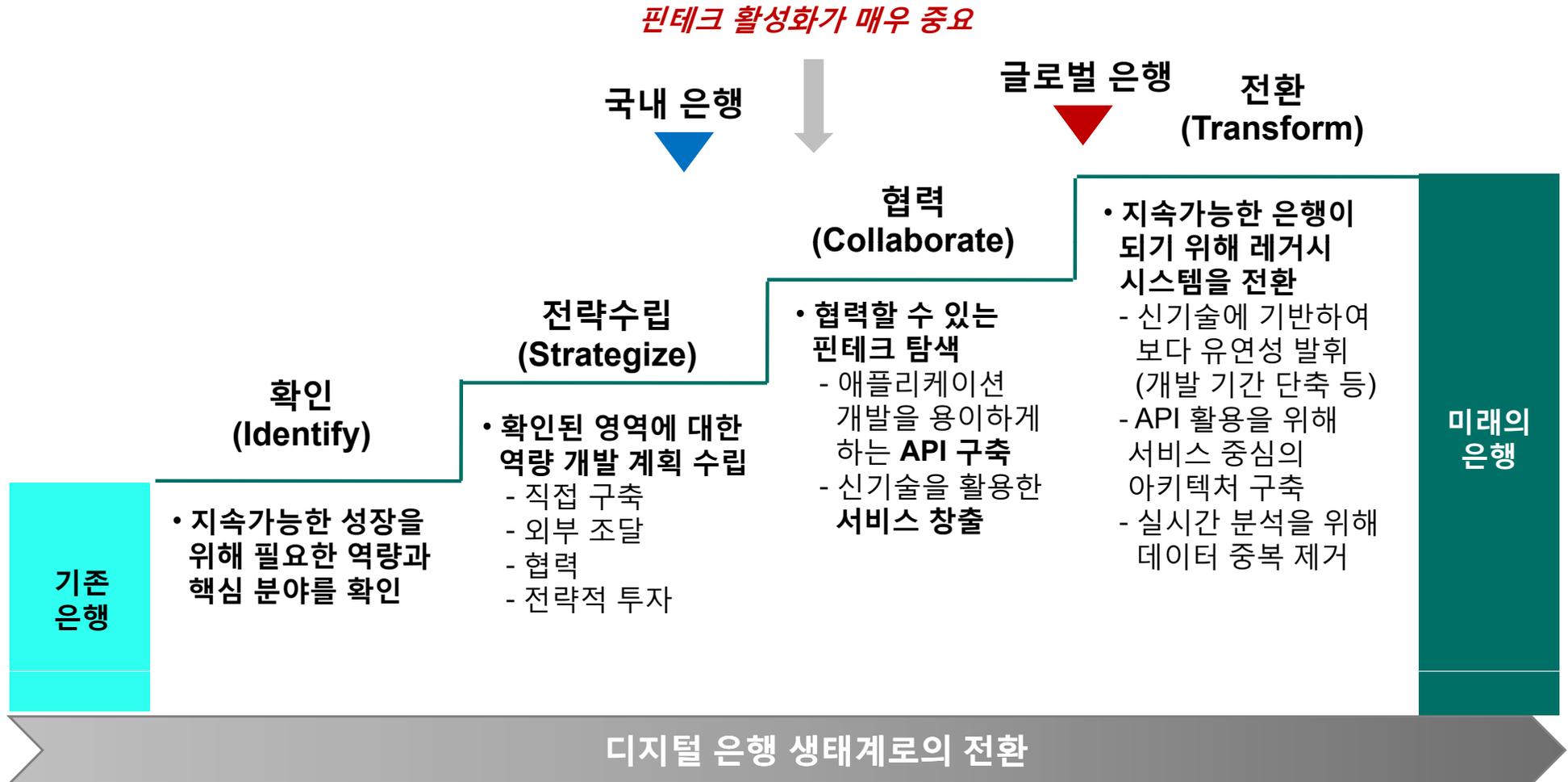
자료: Massimiliano Fuccio, "Open Banking and PSD2" (2016)

Contents

1. 4차 산업혁명 시대 은행의 대응, 디지털 전환
2. 주요국의 은행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동향
3.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슈 및 과제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초기 단계

- 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정
-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까지 전략수립, 기술 확보 위주의 초기 단계



자료: Capgemini Financial Services Analysis 2016

디지털 전환을 위한 리더십과 투자여력 부족

- Citi Research는 한국이 아태 국가중 디지털 전환에 대한 리더십과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평가
-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급이 높은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오픈 बैं킹 및 데이터 등 디지털 정책과 핀테크 육성이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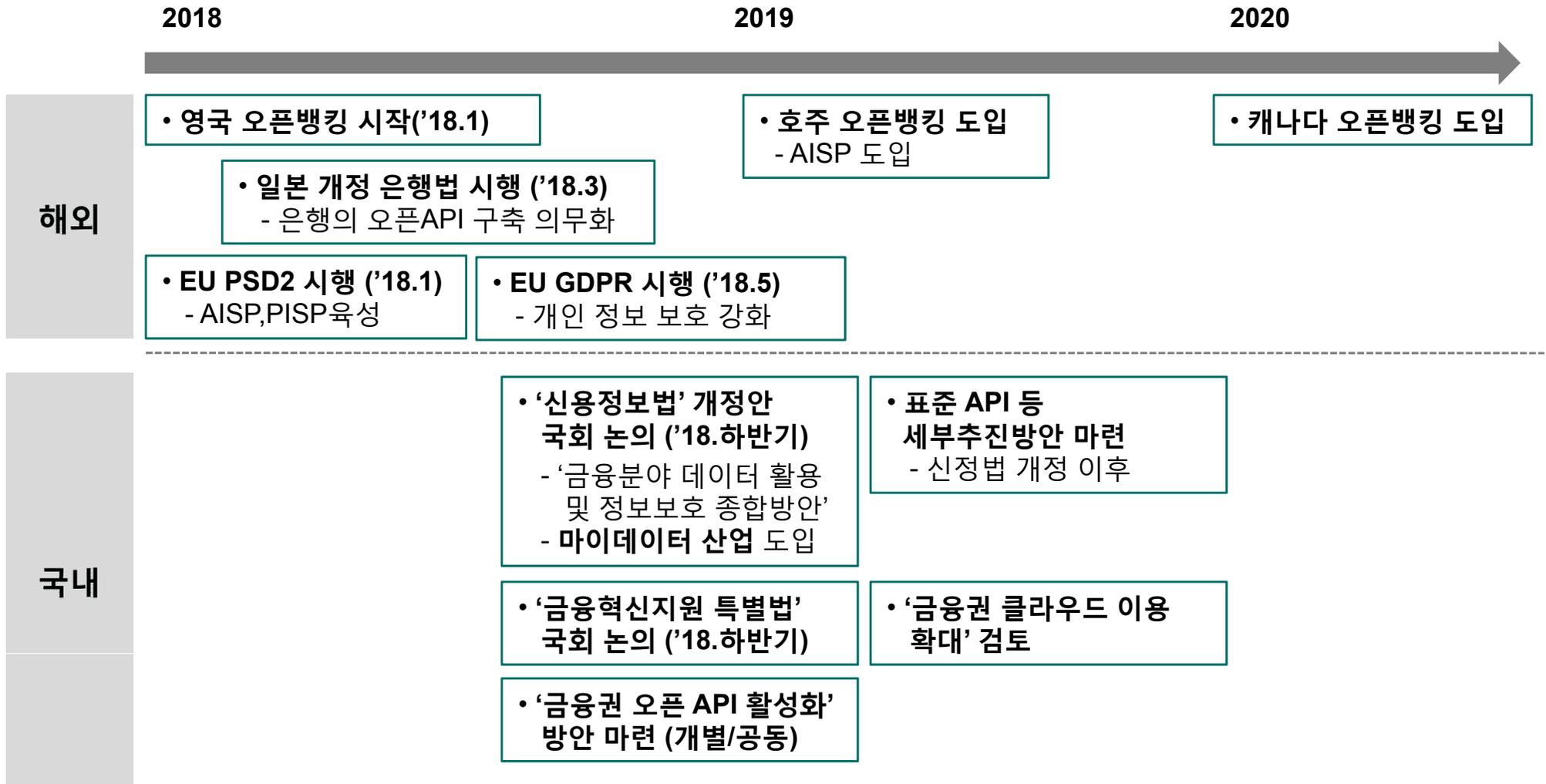
現 기존 은행에 대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평가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은행 경영진 리더십	비즈니스 구조 (상품, 지역 단순성)	미래투자여력 (현재 ROA)	정부의 디지털전환 지원
호주	상	상	중	상
중국	중	상	하	중
홍콩	중	중	상	중
인도	중	상	상	상
인도네시아	중	상	상	중
한국	하	상	하	중
말레이시아	중	중	중	중
필리핀	중	상	상	중
싱가포르	상	중	중	상
대만	중	중	중	하
태국	중	중	상	중

주: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할수록 디지털 전환에 유리하다고 평가
 자료: Citi Research, "Bank of the Future" (2018)

과제 ①: 데이터 및 핀테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

- 향후 3~5년간 은행의 비즈니스모델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들이 시행되고 정착
- 국내 은행들도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리

과제 ②: 금융지주회사내 은행의 고객정보 공유 이슈 해결 필요

- 지주사 내 정보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가능하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창출에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수적 요소
- 이시연(2016)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 조건 하에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공유를 제안

[배경] 원활한 정보공유는 은행을 포함한 지주회사 시너지 창출에 필수 요소
(단, 금융사의 정보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

[As-is]

[To-be]

정보
공유
제약
완화
(案)

-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정보공유 불가능
 - 내부 경영관리상 목적으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해 정보공유 가능 (고객 사전동의 배제)
- 카드 정보유출사태 이후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 제공절차, 취급방침 등의 준수 강조
 - cf) 카드 정보유출사태 이전에는 목적에 관계없이 금융지주회사 등간 자유로운 정보제공이 가능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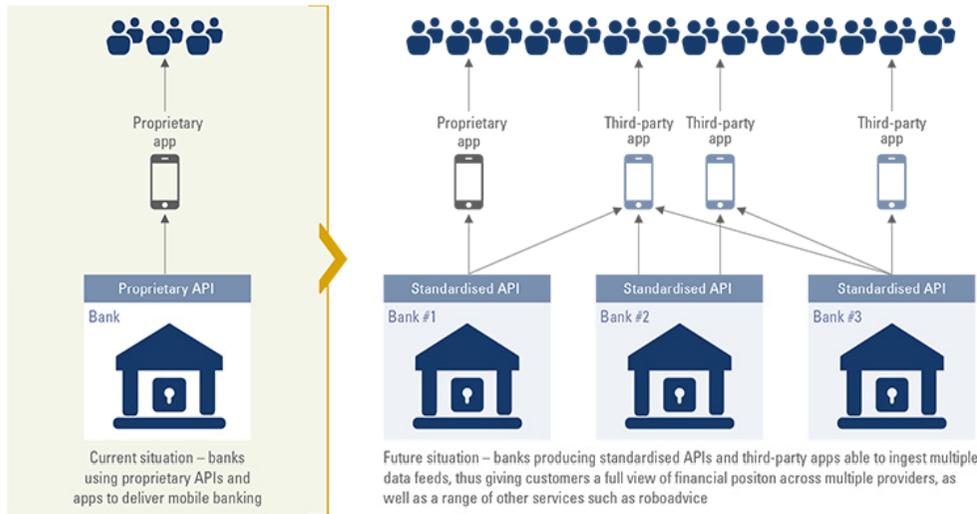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공유 허용
 - 美)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정보공유의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허용하되, 고객의 거부권(Opt-out) 보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안수준 관련 규제 강화
 - 정보유출 등 문제발생시 기관제재 등이 강화
 - 감독당국의 금융 자회사 정보보호체계, 내부통제 수준 평가를 엄격화

과제 ③: 오픈 बैं킹 도입 검토 및 기존 은행의 AISP 참여

- 고객이 제3자 Open API를 통해 금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
 - 현재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에 의존하거나 스크래핑을 활용해야 함
- 오픈 बैं킹 추진시 영국 등 선진 사례와 같이 대형은행도 AISP(계좌정보서비스업자) 자격을 부여할 필요

오픈 बैं킹 도입에 따른 데이터 접근 방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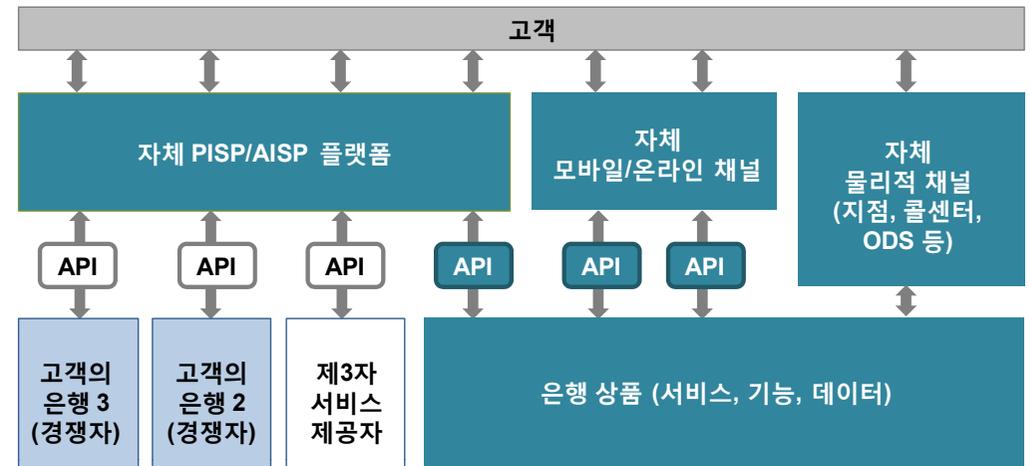
- 고객이 제3자의 Open API를 통해 거래 접근 승인 →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제3자에 전달, 요구주기에 따라 업데이트 가능

자료: : AlixPartners

오픈 बैं킹시 은행도 AISP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 소비자 신뢰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 बैं킹 추진시 대형은행의 AISP(계좌정보서비스업자) 참여 필요
 - * AISP는 국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와 유사
 - 영국 및 유럽의 오픈 बैं킹에서 대형은행도 AISP 수행 가능
 - 자체 AISP 운영시 대형은행은 채널 확대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가능

[은행의 AISP 참여에 따른 채널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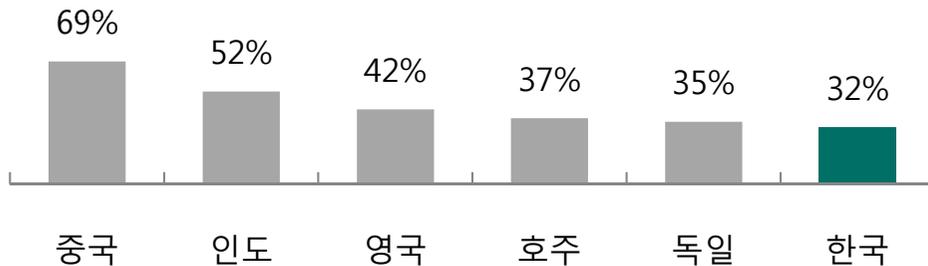
자료: Massimiliano Fuccio, "Open Banking and PSD2" (2016)

과제 ④: 은행의 핀테크 투자 확대 및 당국의 불확실성 해소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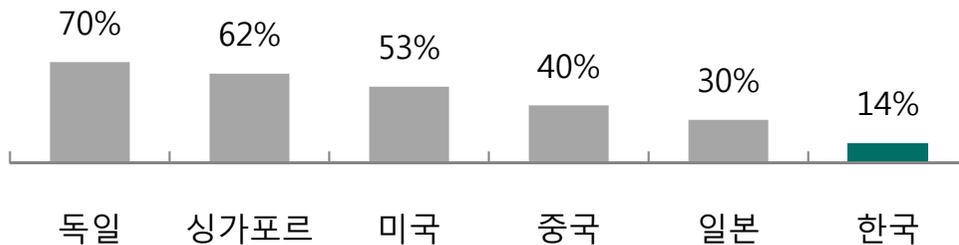
- 세계 수준의 핀테크 업체가 없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는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여건이 미흡
- 글로벌 은행들의 핀테크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도 단순 사업 제휴를 넘어 인수, 지분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당국도 신규 핀테크 도입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적시에 발급

핀테크 인프라 미흡

지난 6개월간 핀테크(기존 금융회사 제외)를 2회 이상 이용한 응답자 비율 (Fintech Index)



금융회사의 핀테크 제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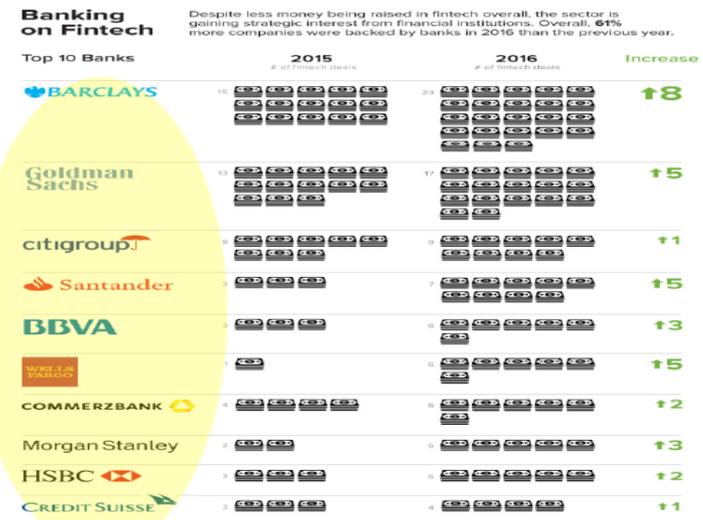


자료: PwC Global Fintech Report 2017

은행이 핀테크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필요

- 은행의 핀테크 투자 확대 및 규제 장벽 해소
 - 단순 사업 제휴를 넘어 인수, 지분투자 확대 필요
 - *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지배(15% 이상 지분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마련됨
 - 도입 검토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최대 장애이므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의 적시 발급

[핀테크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은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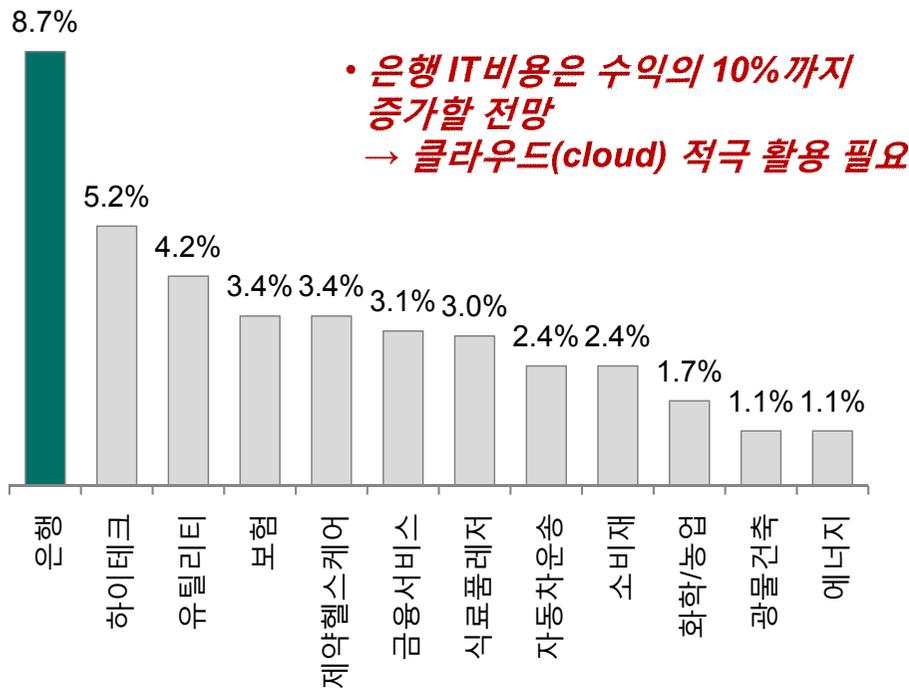


과제 ⑤: 클라우드 활용 및 대면 채널 운영에 대한 규제 유연성 필요

- 은행의 수익대비 IT비용은 8.7%로 타 업권보다 2~3배 높으나, 데이터 관리, 핀테크 투자, 보안 강화 등으로 10%선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은행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호 책임과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이 상충되지 않도록
- 선진국 은행의 경우 대면 채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규모 축소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대면채널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가이드라인 제시보다는 은행에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

디지털 전환으로 IT비용 증가 -> 클라우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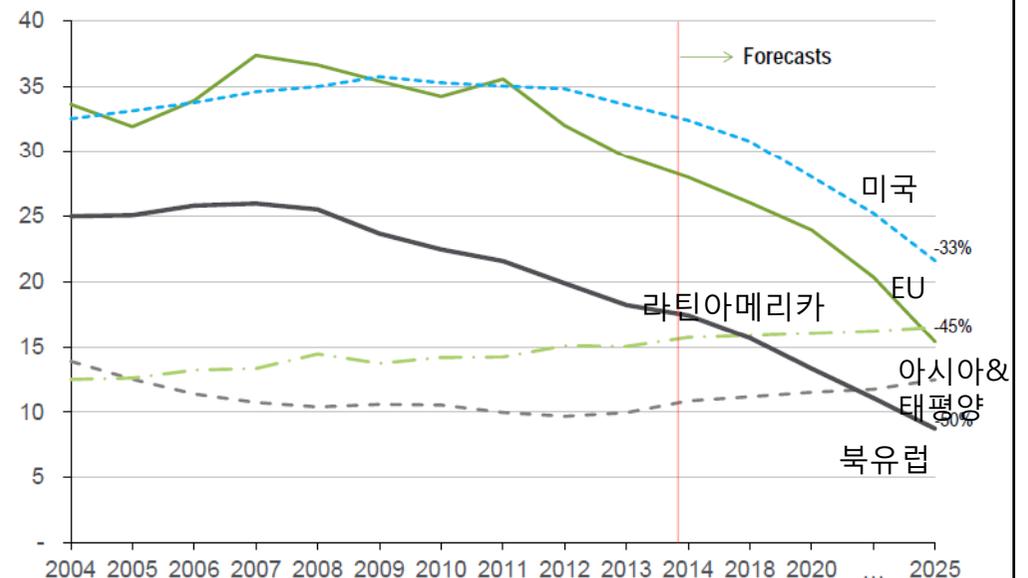
산업별 수익대비 IT비용 % (중간값, 2016)



자료: Citi Research, 'The Bank of Future' (2018), CEB

은행 대면 채널 운영의 규제 유연성 필요

2025년까지의 은행 대면 채널수 전망



자료: Citi, The Digital Disruption, 2016

감사합니다
